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2일, 황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0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1. 16) 상정, 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1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황희 의원)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정책을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u>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u>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u><신 설></u>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전담기관을</u> ----- -----. 제11조의3(<u>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u>) ①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② <u>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u> ③ <u>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u>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분야 지능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기획·조사·연구·개발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4. 문화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관리·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 문화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정보화 사업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 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1조¹⁾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각종

- 1)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화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해오고 있음.²⁾

그런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 문화정책의 조사·연구·개발 전담 기관으로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³⁾ 한국문화정보원은 개별법에 설립근거 없이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일반 규정⁴⁾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국세청 등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 하더라도 법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를 협조받기 어렵고, 대국민 문화정보서비스인 ‘문화포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정보화업무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소속·소관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2) 한국문화정보원 기관 현황은 [참고1] 자료, 관련사업 및 추진현황은 [참고2] 자료 참조

3)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9.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보유 데이터의 연계·수집에 한계가 있는 등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등 대부분의 정보화 전담기관이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기획재정부의 ‘한국재정정보원’(「한국재정정보원법」), 교육부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의 사례와 같이 정보화 전담기관의 설립·운영 근거가 별도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⁵⁾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⁶⁾

다만, 개정안은 한국문화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로 안 제11조의3을 신설하면서 현행 제11조제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관련 근거를 삭제하고 있으나, 한국문화정보원 설립의 근거가 별도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할 경우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부 삭제하기보다는 적정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각 부처별 정보화 기관 운영 현황 및 법적 근거는 [참고3] 자료 참조

6)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다른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그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의 법정 법인화 현황은 [참고3] 자료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